

## 이천시노사평화중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

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
| 의안<br>번호 |  |
|----------|--|

제출연월일 : 2001. 10.

제 출 자 : 이 천 시 장

### □ 제정이유

- 노동조합 관련 집회 및 시위, 노동쟁의 발생시 문제의 신속한 수습과 재발방지
- 노사평화의 정착과 지역경제 발전 도모

### □ 주요골자

가. 위원회의 구성 : 15인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(안 제3조)

- 지역내 사회단체장 및 시민단체장
- 시산업복지국장, 관할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 등

나. 임기 :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(안 제4조)

- 임기만료 전 현직에서 이임된 경우, 그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

다. 위원회의 소집(안 제6조)

- 장기적인 집회로 시민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할 때
- 노사분규가 원만한 합의로 타결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
- 노사의 중재요청이 있을 때
-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-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

라. 관계기관 등의 협조(안 제7조))

- 중재를 신청한 당사자·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 시켜 의견청취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

마. 의결사항의 효력(안 제8조)

- 노동단체·사용자단체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토록하고
- 관계행정기관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시책에 우선 반영
- 중재안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 확인 및 이행 촉구

바. 간사 및 서기 : 간사 - 지역경제과장, 서기 - 기업지원담당(안 제9조)

-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이행 여부 수시 확인 및 위원장에게 보고

사. 공무원이 아닌 참석위원에 대하여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)

이천시조례 제 호

## 이천시노사평화중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이천시 지역내 노·사의 평화 정착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이천시노사평화중재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한다)의 설치와 그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노사의 중재 및 의견을 조정한다.

- 1.지역내 노사안정 및 평화정착
- 2.노사분규에 대한 합의점 도출
- 3.노사의 부정적인 의식, 관행과 제도상의 문제점 개선방안
- 4.기타 노사협력 및 지역경제 안정에 관한 사항

**제3조(구성)**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,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.

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- 1.지역내 사회단체장 및 시민단체장
- 2.시산업복지국장, 관할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

**제4조(임기)**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②위원이 임기만료 전 현직에서 이임된 경우, 그 후임자는 전임자의 위원 자격을 승계 하되 다만,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**제5조(직무)**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
**제6조(회의)**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
1. 장기적인 집회로 시민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할 때
2. 노사분규가 원만한 합의로 타결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
3. 노사의 중재요청이 있을 때
4.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
5.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6. 기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

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.

**제7조(관계기관 등의 협조)** ①위원회는 제2조에 규정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재를 신청한 당사자·관계공무원·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 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중재신청 당사자·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의결사항의 효력)** ①노동단체·사용자단체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관계행정기관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시책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통보한 중재안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노·사와 관계행정기관에 그에 대한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**제9조(간사등)** ①위원회에 업무처리와 보조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.

②간사는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업지원담당으로 한다.

③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진행 상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수당 등)** 위원회에 참석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기타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수당,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1조(운영규정)**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| 소관실·과·소     |                 | 지역경제과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입<br>안<br>자 | 실·과·소장<br>직위·성명 | 지역경제과장<br>김진목   |
|             | 담당·팀장<br>직위·성명  | 기업지원담당<br>노영운   |
|             | 담당자<br>성명·전화    | 최현순<br>644-2285 |